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기획예산과)

|       |                                                                |
|-------|----------------------------------------------------------------|
| 의안번호  | 제185호                                                          |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2023. 10. 5.)                                            |
| 의 안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br>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 검 토   | 전문위원 정진만                                                       |

## 1. 제안이유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일부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법 및 행정기본법」(만 나이 통일법)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여 정비(안 제1조~안 제9조)
- 나. 기타 띄어쓰기 및 항 번호 매김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행정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3. 6. 22. ~ 7. 12.(20일),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제158조<sup>1)</sup> 및 「행정기본법」 제7조의2<sup>2)</sup>의 일부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

1)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2)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제2조제1호 : “만 24세” → “24세”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 “만 65세” → “65세”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 “만 65세” → “65세”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만 13세” → “13세” ,

같은 항 제3호 : “만 16세” → “16세”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만 18세” → “18세”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만11세에서 만12세” → “11세에서 12세”

같은 조 제2호 : “만13세부터 만18세” → “13세부터 18세”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만6세에서 만12세” → “6세에서 12세”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표 대상란 : “만 18세” → 각각 “18세”, “만 19세” → 각각 “19세”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 “만65세” → “65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